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 추가〉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812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정회용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81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회용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1.

(3) 회 부 일 : 2025. 3.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지도하는 보행지도사는 2021년에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반면, 이와 유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점역·교정사는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되어 있음. 보행지도사는 점역·교정사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자립·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점역·교정사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 71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u>지방자치단체</u>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u>점역(點譯)·교정사</u>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 <u>지방자치단체</u> ----- ----- ----- ----- <u>점역(點譯)·교정사, 보행지도사</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¹⁾

- 의지·보조기 기사와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경우는 국가자격인데 비해(참고자료 1: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조문),
- 점역·교정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한국수어 통역사는 한국농아인협회가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것임.²⁾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현황>

(‘24년 말 기준)

구분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자격보유자 수	1,590명	1급: 5,566명 2급: 5,580명	1급: 3,830명 2급: 1,946명 3급: 90명	2,037명	1급: 218명 2급: 238명 3급: 1,244명
	합계: 1,590명	합계: 21,146명	합계: 5,866명	합계: 2,037명	합계: 1,700명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2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71조	「장애인복지법」 제71조
자격 성격	국가자격	국가자격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국가공인
시행 기관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사)한국농아인 협회	(사)한국시각 장애인 연합회
주 활동 영역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의 제조·수리 기관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 언어재활을 실시하는 민간(사설) 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수어통역센터, 종합 병원 등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자료: 보건복지부

- 1)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2)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한편,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는 전문가임.

보행지도사 자격제도³⁾는 2010년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관리·운영해 오고 있는데,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인을 받아 ‘민간자격 국가공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지금까지 배출된 보행지도사는 253명임.⁴⁾

<보행지도사 현황>

(‘24년 말 기준)

구분	보행지도사
자격보유자 수	• 등급 구분 없음.
	합계: 253명
법적 근거	-
자격성격	민간자격 국가공인
시행 기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응시자격 및 시험 과목	• 응시자격: 만 19세 이상(중증 시각장애인은 응시불가) • 필기시험: 보행이론, 보행지도법, 시각장애의 이해 • 실기시험: 보행기초기술, 지팡이보행기술, 실외보행기술
주 활동 영역	•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등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현행법 제71조제4항⁵⁾에 따라 보행지도사 양성에

3) 보행지도사 필기시험은 보행이론, 보행지도법 그리고 시각장애의 이해 총 3과목이며, 실기시험은 보행기초기술, 지팡이보행기술 그리고 실외보행기술 총 3과목으로, 응시자격은 필기시험의 경우 만 19세 이상,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임.

4) 보건복지부 제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시각장애인의 독립 보행에 필요한 재활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시각장애의 경우는 그 발생 원인의 92.6%가 후천적 사고 및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중도 장애로,⁶⁾ 이들의 보행 제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론적 기반 위에서 이뤄지는 전문적 보행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보행지도사가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포함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양성 및 훈련에 관한 국가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경우,

보행지도사 자격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응시자격, 시험과목, 관련 학과 개설, 보수교육 등에 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시행일 조정(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보행지도와 관련한 교육과정이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고 보행지도사 자격 취득 전 실습 또한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필기·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이 부여되는 구조로, 자격증 취득 이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4시간에 그치고 있음.⁷⁾

5) 「장애인복지법」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7)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 유선 확인(2025.3.24.)

- 반면, 미국에서는 보행지도 관련 전공으로 공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350시간 이상의 실습을 마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미국과 호주 모두 5년마다 자격 갱신을 위해 100점 이상의 보수교육 학점을 이수해야 함.⁸⁾

4.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지도하며, 자립·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련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은 2021년 민간자격 국가공인 승격으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등재를 위한 공신력을 일부 확보하였으나, 현재 등급의 구분 없이 필기 및 실기시험만을 통해 자격이 부과되고, 전문학위 교육 부재, 보행지도사 자격의 실습 의무시간 등 미비한 점들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 후 장애인복지 전문인력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행지도사의 체계적 관리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보행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8)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시각장애인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정책 2021-17, 한국장애인개발원.

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보행지도사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하는 만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도 포함해야 함

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조건부 찬성)

- 보행지도사가 시각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개념, 범위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 규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확대와 함께 국가자격인력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우선 마련되어야 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 ②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③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삭제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삭제

- ③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기관·관련 학과·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